

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7-제80호
----------	-----------

제출연월일 : 2007. 11. 27.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1. 제안이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세계인의 날이 매년 5월 20일로 제정(2007.5.17, 법률 제8442호)됨에 따라 이에 부합코자 조례에 명시된 세계인의 날을 변경하고, 세계인의 날 행사주관과 관련 미흡한 부분을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매년 5월 21일로 규정된 세계인의 날을 매년 5월 20일로 개정함(안 제14조제1항)
- 나. 세계인의 날 행사 주관과 관련 예산의 범위안에서 식사제공 및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14조제3항)

3. 주요 토의과제 : 없음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 따로붙임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실
-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2) 입법예고 결과 : 접수 의견 없음
 - 가) 예고기간 : 2007. 10. 25 ~ 11. 14(21일간)
 - 나) 예고방법 : 일간신문 및 시청홈페이지 게시 공고
 - 다) 예고문안 : 따로 붙임
 -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1항중 “매년 5월 21일을 사천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를 “매년 5월 20일을 사천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로 한다.

제14조3항중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를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사제공 및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세계인의 날) ①시장은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u>매년 5월 21일을 사천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u>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		제14조(세계인의날)①----- ----- ----- ----- <u>매년 5월</u> <u>20일을 사천시 세계인의 날로</u> <u>하고</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시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시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 <u>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사제공 및 기념품을</u> <u>지급할 수 있으며,</u> ----- -----.		

관계법령 발췌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2007.5.17 법률 제 844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세계인의 날) 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한다.

